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 특별절차의 활용

일시 2009년 10월 14일(수) 13:30~18: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시간	순서
13:30-13:50	인사말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13:50-14:15	소개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 방식 Mr. 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14:15-14:30	영상물 상영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영상물
14:30- 15:30	사례발표1부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 박지웅(전 법무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 이태봉(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박대성(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15:30-16:00	휴식
16:00-16:40	사례발표 2 언론의 자유: 최상재(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집회 시위의 자유: 유성(인권단체 연석회의 활동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동훈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홍성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 수석부위원장)
16:40-17:10	[지정토론] 노마 강 무이코, (Amnesty International 동아시아 조사관)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10-17:40	질의/응답
17:40-18:00	정리

목차

사례발표 1	현(現)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의 억압상태 박지웅 (전 법무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5
사례발표 2	사이버 공간상 표현의 자유 이태봉 (언론소재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16
사례발표 3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박대성 (필명 ‘미너르바, 인터넷 논객’)30
사례발표 4	언론의 자유 침해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33
사례발표 5	집회 사유의 자유 유성 (인문단체연석회의 활동가)41
사례발표 6	대한민국에서 교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 동후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54
사례발표 7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다량 징계 홍성호 (전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 수석부위원장)66

[시례발표]

현(現)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의 억압실태

박지웅 | 전 법무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란 존재하는가? 오늘 연설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현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의 억압실태를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반세기 동안 개인과 사회 그 모든 차원에서 사상적으로 편협함으로 인한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 하나의 기제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사회 진보의 욕구를 가로막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기제가 국가보안법을 처벌하기 위한 공안 기구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란, 명백히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와 민족주의와 같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신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UN 「시민적·경제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정권의 주장과 배치되는 의견들을 개선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를 '공안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하여 모든 사회적인 진보의 욕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특별보고관께서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992년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서 국가보안법의 규약위반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CCPR/C/79/Add.6, 25.Sep.1992), 1999년 인권이사회 제2차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최종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 B규약 제9조, 제18조, 제19조와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심문, 실체법적 의무에 관한 특별규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면서“,”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반복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권교체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의 탄압 실태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CCPR/C/79/Add. 144, 1 Nov.1999)

2. 현 정부 들어서 사상의 자유 탄압 사례

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증가율은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 현재 2008년 1. 1.부터 8. 26.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28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노무현 정부), 국회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법률안이 제출될 정도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시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국회역시 그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의 북한에 방문하여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난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치하여 다음 사례에서 보듯,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는, 국가보안법 재판기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위헌·무효의 법률인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합헌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4367,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의 유죄판결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고 있는지,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증대하는지에 대한 논증이 없을 뿐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이적단체에 대하여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원칙이 명확한 기준으로 논증되고, 엄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진보사회단체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강령과 교조에 사회주의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면 여전히 이적단체로 판명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할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1099판결, 1999. 10. 8. 선고 99도2437판결,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등)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이적단체의 기준과 이적표현물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은 여전히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의 주된 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수립을 표방하는 단체, 남북화해를 주장하며 통일운동을 펼치는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에서 보듯이 명백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나, 서점에서 책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까지 처벌하는 사례

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실천연대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현 정권 이후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사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약칭 사노련)은 2008년 2월 23일에 결성된 단체이다. 사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비정규직 철폐와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월부터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도 꾸준히 참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단체를 결성한 오세철 교수 등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8. 2. 23.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이라는 소위 ‘이적단체’를 구성하여 이에 가입하고(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나. 같은 목적으로 “사회주의자”, “가자 노동해방”, “대중행동강령”, “우리의 입장” 및 “촛불노동자 13대 강령” 등을 제작·소지하고 이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에게 반포하는 등 소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나) 실천연대 사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약칭 실천연대)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2000년에 결성되었습니다.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행위 위반 혐의로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간부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공소사실로 적시된 것은, 즉, 이적단체를 구성하여 가입하였다는 것이며(국가보안법 제2조), 조직원의 사상학습 이북의 핵실험을 옹호,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을 전개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 선동 및 이에 동조하며(동법 제7조),

이북 공작원을 만났는데 그 증거로 공작원이 보낸 노동신문 기사 7건을 근거로 회합 통신(제8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북경에서 만난 북한의 민족 화해협의회 의장을 만난 것이 잠입탈출(제6조), 1987년 김현희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 파사건과 같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선거에서 테러 등이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이런 선거테러에서 득을 본 세력은 언제나 친미세력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점을 유의하여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고도 평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UCC를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올린 것을 허위사실날조유포(제4조 제1항 제6호) 등라는 것이었습니다.

(3)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확대

가)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확대

현 정부에 들어서 공안탄압은, 이러한 진보적인 사회발전의 요구를 하는 단체에 대한 탄압만으로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표현물에 자의적으로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의심이 되는 글을 올린 민간단체에 대한 삭제명령 역시 감행되고 있습니다. 2007. 7.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20여개의 민간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명령을 단행하였고, 2008. 2. 14. 이에 응하지 않은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7개 민간단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 발부하였습니다.

나) 서점 주인에 대한 처벌 사례

또한, 2007년 인터넷 서점 <미르북>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 이외에, 수원의 <남문서점>, 중국동의 <가자 한책방>등 오프라인 한책방들 몇 곳이 구속 혹은 불구속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를 받았고, 서점당 500여권의 중고서적을 압수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고 서점 주인들은 올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나. 기타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억압사례

기타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현 정부의 공안을 내세운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표

현의 자유등에 대한 인권 탄압 조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간관계상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1)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이에 따른 파면조치사례

국방부는 2008. 7. 31. 대중성 높은 인문교양서와 십 수만권이 팔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엄 촘스키 교수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등의 베스트셀러를 '불온서적' 이라고 지정하여 군장병들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을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8. 2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군인권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헌법 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따라, 이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7인의 법무관은 같은 해 10. 22. 군인이 된자의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알권리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면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군 통수계통을 문란시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군기장 문란행위라는 점이었습니다. 연설자도 그 중 하나입니다.

(2)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제 다음 연설자이신, 미네르바 박대성 씨 역시, 이러한 공안탄압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방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의 유명 인터넷 논객이셨습니다. 그는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러더스의 부실과 환율 폭등 등, 대한민국 경제의 변동 추이를 정확히 예견하여 주목을 받게되고, 현 정부의 경제 운영 실태에 대한 가시돋힌 비판글들을 게재하자, 일부의 인터넷 글들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상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하였다는 명목을 내세워, 2009년 1월 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 및 구속되었다 2009. 4. 20. 1심 법원에 의하여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미네르바씨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3)PD수첩 PD 체포사태

시사고발 프로인 PD수첩은 2008년 현 정부의 소고기협상의 핵심 쟁점인 30개월 소

고기의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소고기를 수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적인 관심사를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정부의 소고기협상의 실태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촛불시위로 이어지면서, 현 정부는 PD수첩 PD가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된 일부의 오역을 문제삼아 농림부 장관 및 협상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PD를 체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2004)」,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국가보안법을 없애라(200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신공안정국에맞서는대국민토론회(200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1심판결에 대하여(2009)」,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95·6월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고자료 1>

2008년 국가보안법 일지

•1월 2일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 학생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연행, 구속. 징역 2년 6월, 징유 4년, 자격정지 2년

•1월 25일

농민시인 정설교씨가 인터넷 상에 한미FTA 반대, 통일농업 실현, 미국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월 29일

전교조 김형근 교사 사건 : 학교당국과 사전협의 하에 학생들과 통일등반행사에 참여했는데, 행사 과정에 순창 회문산에서 개최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관한 것이 '빨치산을 추모'한 것으로 조선일보에 의해 왜곡, 둔갑. 행사 후 2년이 지난 사건인데

구속. 기소(2월 22일)

• 1월 31일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무죄선고 : 국가기밀 누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회합통신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구글어스,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과 언론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지된 사실이라는 점, 설사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무죄를 선고(1심). 검사 항소. 2심 재판 진행 중 (2008.10 현재)

• 2월 10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무직) 민가협 통계에 없는 인물임.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2월 19일

송현아씨 학생운동(한총련) 배후조직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서울 시경 소속 옥인동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 :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으로 앞서 구속된 최희정, 이재춘, 박준의씨와 같은 사건의 연장선.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과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인정되고 정작 '배후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 → 1심 재판 진행 중(2008.10. 현재)

• 2월 24일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가택압수수색, 경찰 조사. 동아리 활동지도와 인터넷에 올린 16건의 게시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 8월 2일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2008.10)

• 2월 27일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 남측본부 의장 연행, 구속 : 97년 명지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7기 한총련 의장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역임하며 9년간 수배생활 끝에 연행, 구속. 8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실형선고(1심). 2심 재판 중(2008.10 현재)

• 3월 13일

국정원이 이른바 '일심화' 사건 장민호(46.미국명 마이클 장)씨를 접견해 회유 협박 : 국정원 요원 2명이 대전 교도소로 찾아가 장씨를 만나 "이제 정권이 오른쪽으로 갔으니 청와대 386에서부터 통일연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들을 찾으

려 한다”며 “장선생이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출소 후 자기 살 길 준비에 바쁘는데 장 선생은 7년 만기 다 채우고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면서 사실상의 회유,협박

•4월 17일

대법원이 재독 사회학자인 독일 뮌스터대 송두울 교수와 임동규 범민련 전 광주전남의 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4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삭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7개 단체대표(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중연대, 전국국민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형사고발을 위해 경찰에 소환하여 조사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여러 국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권고

•6월 2일

개인 블로그에 사회과학 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현직 하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7월 4일

임동규 전 범민련 광주전남의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1년6월, 집유 3년 선고

•7월 9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현직 장교(○○공수여단 소속인 김 중위)의 대학 시절 전력 (2004년 경희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한총련 대의원)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7월 12일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에게 은신처와 위조학생증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2명 참고인 조사 받음. 이후 윤기진 사용 통장건으로 추가 1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예정

•7월 24일

지난 5월 불법 시위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04년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백형진(2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7월 24일

송두율(재독 사회학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 집유 5년 선고

•8월 2일

최보경(간디학교 역사담당 교사) 이적표현물 제작유포, 학생들에게 가르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불구속 기소

•8월 26일

사노련 사건 : 지난 8월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의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 : 법원이 28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검찰당국은 관련자 재소환,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장 재청구 준비중

•8월 28일

원정화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이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

•9월 7일

광우병 국민대회의에 적극 참가했던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단체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촛불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함

•9월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구성혐의 관련 항소심(2심) 결과 : 1심과 같이 이적단체 구성 등 검찰 공소내용 유죄판결. 관련 인사들의 평양 방북건 등 일부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형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남.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 9월 27일 오전 6시경 국정원과 경찰은 실천연대 사무실과 주요 일꾼들의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 실천연대 간부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됨. 이후 10여명에 대한 추가 소환장 발부되어 조사를 받거나 연기한 상황

•9월 27일

김복기(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 연행.

•9월 29일

진주의 통일운동단체인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사무실과 미디어 단체인 ‘열린영

상' 사무실과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범청학련 남측본부'로부터 북한 영화 '도시처녀 시집와요'와 '민족과 운명' 그리고 어린이 만화영화 등 등 북한영상물을 구입혐의

• **10월 9일**

재미동포 정00씨 국정원 연행, 조사 : 미주 6.15 중부지역 회원이며 재미동포인 정00씨가 사업차 한국에 들렀다가 10월 9일 숙소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당하고 당일 국정원에 출두해서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풀려남. 14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출두하라며 출국금지 상태.

• **10월 15일**

원정화 1심 징역5년 실형 선고..항소 포기

• **10월 20일**

김찬주(조선대 경상대 학생회장, 16기 한총련 대의원) 불구속 기소

• **10월 24일**

최한욱 등 실천연대 구속자 기소, 김복기(청학연대) 기소

• **11월 17일**

사노련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소명부족의 이유로 기각

[출처 : 「국가보안법60년토론회(2008)」,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자료집서 발췌]

[사례발표]

사이버 공상 표현의 자유

이태봉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1. 개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2008년 5월과 6월,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지난 정부에서와 정반대의 보도를 하고, 수입조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하여 왜곡·허위보도를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 한다)의 보도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들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로 개설되었다.

인터넷 사업자 '다음'의 카페로 개설된 온라인 커뮤니티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http://cafe.daum.net/stopcjd>, 이하 '언소주'라 한다)은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반대하여 광고불매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중동의 광고리스트(Ad list)를 매일 카페에 게재하였다.

시민들의 광고불매운동이 확대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터넷 사업자 '다음'에 관련 글들의 삭제를 요구하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카페의 폐쇄를 요구하였다.

한국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신문사는 언론권력의 영향력으로 정계와 재계를 압박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촉구하였다.

이에 관련 글들을 포함한 유사 글들이 대대적으로 삭제되고, 카페의 운영진 21명을 비롯한 24명이 기소되어 2009년 2월 형법상 업무방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중대하게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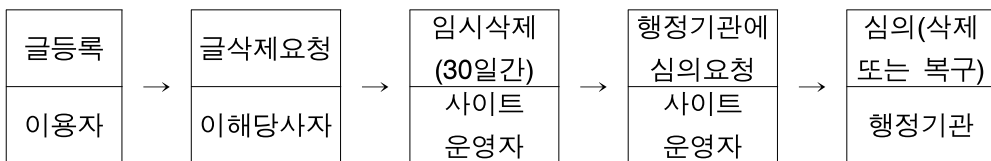
해되었고 위촉되었다.

2 사이트 운영자의 임시조치에 의한 글 삭제

조선일보는 1차적으로 광고리스트가 게재되고 있던 주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모든 광고리스트에 대하여 일괄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8년 6월 20일부터 개별 글들에 대하여 삭제요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삭제요구를 한 글은 광고리스트와 광고리스트나 광고불매운동 관련 내용이 포함된 모든 글,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왜곡보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이었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해당 글들을 30일간 임시삭제조치¹⁾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다.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연소주 카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글 삭제요구를 하였고 거의 실시간으로 글들이 삭제되었다. 등록된 새 글이 삭제되기까지는 5분이면 충분하였다.



* 이해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으면 사이트 운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일단 임시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1) 임시조치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침해를 신고할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사법적 판단없이도 해당 게시물을 최대 30일간 임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인터넷 사업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침해 신고가 있을 경우 일단 무조건 임시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글 게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해지며, 30일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설령 30일후 복구가 되더라도 그 글은 이미 사장된 글이 되므로 사실상 영구삭제나 다름 없다. 정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글쓴이: 푸니 등급변경 조회수: 7836 08.06.24 09:57

http://cafe.daum.net/stopcjd/bgf/23 **본1**

<공지사항> 다음 주의사항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의 대상은 '조중동'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은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함께 하여야 하는 쪽입니다.

광고기업에게는 '제품 값에 포함된 광고비를 지불하는 (잠재적)소비자로서' 건전하지 못한 언론사에 이득을 주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 입니다.

결코 불쾌함 유발, 거친 항의가 목적이 아니니 전화, 메일, 홈페이지 글 등록 시는 반드시 선량한 소비자로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의사전달은 이 운동의 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어린 훗불이 도로에 떨어진 훗농을 뒤흔드는 심정으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 카페는 '불량언론 퇴출, 바른언론 육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진 네티즌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조중동 광고 리스트'를 단순 취합 제공할 뿐입니다.

이 글을 [찜]하실 때는 위 주의 사항을 포함한 전체 글 모두 찜만 허용되며 광고리스트 등 일부 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카페는 반드시 밝혀주세요. <http://cafe.daum.net/stopcjd>

지금에 모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훗불들이 모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카페를 영원한 훗불들의 광장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자 광고리스트입니다.

★대기업 / ◆미상광고 / ▶병원, 제약, 건강의료 / ◆건설,분양,회원모집 / ♣도서출판사 / ♣여행사 / □교육,학원 / ◆외국계(수입차 등)

<조선일보>

★1면 배너 s-oil 02-3772-0777(고객센터) 광고팀 02 3772 5926

★1면 배너 금강제화 02 530 7000

①1면 - 매장모공원 진달래추모공원 (www.jindalrae.co.kr, 1577-0440)

②2면 - 롯데관광(www.lottetour.com, 해외여행 1577-3000, 국내여행 1577-3700)

③3면 - 한국농업대학 (www.kn.ac.kr, 031-229-5114, 031-229-5201~5208)

4면 - 재향군인회, 성우회, 6.25 참전유공자회

⑤5면 - 아트밸리 골프클럽 (www.artvalleycc.net, 031-202-9501~3)

⑥6면 - 한진관광 칼투어 (www.kaltour.com, 1566-1155)

⑦7면 - (전면광고)신원종합개발 상도역 아침도시 분양 (www.swc.co.kr, 02-6908-7000)

⑧8면 - 키출판사 Testall (www.testall.co.kr, 02-735-4021)

9면 - (전면광고)도요타 렉서스 (www.lexus.xo.kr, 080-555-3597, 080-924-9000)

10면 - 주간조선

* 삭제된 조중동 광고리스트 원본글, 공개된 광고주,전화번호,홈페이지주소 기재

Daum 카페 |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 Windows Internet Explorer

http://cafe.daum.net/stopcj4

인론 소비자 주권운동 국민캠페인 (구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cafe.daum.net/stopcj4 **천만 아고라인은 다음을 지지합니다!**
"이 카페는 조중동을 취재 금지 카페입니다"

사람(공개) 회원수 30436 자주가는 카페 카페 지원신청 >

카페정보 내 정보

가입 3344 방문 30147 새글 1467

· 카페지기 아고라

· 개설일 2008.05.31 프로필 >

이 관리 검색공개 설정

오늘의 속재 & 감사

- 속재 감사 (광고별제)
- 속재 감사 (카피공보)

외국인론 광고별제 캠페인

- 오늘 속재 허가
- 광고 전체리스트
- 광고주 개별하기
- 속재 후기/아이디어

항상 & 지속 감사 관리

- 성공사례 재보
- 카페공식 참여가입 후원
- 익숙위한 광고주 신고
- 외신성능 각오다지기

조중동 철독 캠페인

오늘 속재 허가 오늘자 조중동 전체 광고리스트입니다.

글쓰기 새글 1 / 22

전체선택 선택 글 삭제 이동 선택 회원 등급변경 스텔신고 관리

번호	말대리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		[6월 24일 오늘의 속재] 25일차 광고리스트 [303]	뿌니	8040	09:57
2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3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4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5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6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7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8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9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0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1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2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3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4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5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6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7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8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19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20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21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22		관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http://cafe.daum.net/_c21_/edited_cafelist_dropdown글(들) 기다리는 중...

* 무더기로 임시삭제 조치되고 있는 게시물, 게시판의 모든 글들이 삭제됨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p>지금은 반 전시 체제입니다!!! [8] <small>NEW</small></p>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p>오늘은 백화점들이 조선 밀어주는날? [7] <small>NEW</small></p>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p>⚠ 권리 침해 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p>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모니터링으로 실시간으로 임시삭제 되고 있는 글들

3. 행정심의 및 권고에 의한 글 영구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포탈사이트 다음이 심의를 의뢰한 80개의 글들 중 58개에 대하여 심의규정위반 삭제결정을 내렸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심의결과를 알리는 공문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권고를 하였고 이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적 권고에 따라 '광고리스트'를 포함한 모든 글에 대하여 대대적인 영구삭제를 시행하였다.

이로 58개의 글들이 즉시 영구삭제되었으며, 언소주 카페를 비롯하여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이 유사글이라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삭제되었다.

광고기업명, 공개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게시물은 물론 단순히 '광고리스트가 게재된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영구삭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때 인터넷 사업자 '다음'에서 2008년 7월 2일부터 7일까지 단순히 유사글이라는 이유로 600건 이상이 영구삭제되었다²⁾.

이러한 유사사례 글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모니터링에 의하여 거의 실시간

으로 영구삭제가 진행되었다.

122	삼진제약 게보린 vs 타이레놀 비교 분석 - 진통제 복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7]
115	한겨레, 경향 !!!!! [1]
111	신문매체 광고 전략 080705-1(냉무)
110	조선광고 080704-1(냉무) [3]
109	[특종] 대검찰청 광우병과담 진원지, 촛불 배후 찾았다. (펌글) [4]
97	조중동 광고는 아니지만.. 대천해수욕장 가지 맙시다. [2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88	[경고] 다음넷은 임시조치의 횡포를 중단하라! [31]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삭제 조치된 글입니다. 관련내용 보기
63	7.2.자 조선일보 광고목록도 궁금합니다. [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사사례 삭제권고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영구삭제 되고 있는 글들



4. 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요구 및 규제

조선일보는 게시글의 삭제요구에 거치지 않고 6월 23일 인터넷 사업자인 '다음'에 '언소주 카페의 사이트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언론사 광고불매운동 정보에 대한 자정활동 협조 요청' 결정을 하였다. 행정기관의 이러한 심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 '다음'은 언소주 카페에

2) PD저널(2008.7.9)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68>

대하여 '카페 운영 유의'를 요구하였으며 이로써 연소주는 '카페 폐쇄 우려'로 사이트 운영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Clean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

회원님,안녕하세요? Daum클린인터넷 센터입니다.

회원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안내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① 위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 cafe.daum.net/stopcjd)
- ① 일시:** 2008-07-08 17:20
- ① 조치내용:** 안내
- ① 사유:** 자정활동 협조 요청(특정 언론사 광고불매운동 정보)

※ 회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정 언론사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자정활동 협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카페 운영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aum은 언제나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회원님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는 Daum이 되겠습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Daum" <http://www.daum.net>

* 연소주 카페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정 언론사 광고불매운동 정보 자정 활동 협조 요청' 심의 결정에 따른 카페 운영 유의 요청

5. 사이트 운영진 및 광고리스트 등록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중동 3개 신문사는 언론권력의 영향력으로 언소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에 압력을 가하여³⁾ 형사처벌을 촉구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형사처벌을 촉구하였다.

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게시글 삭제요구가 있던 2008년 6월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특별 수사지휘 공문을 하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재차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3) 한겨레(2008.6.20)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294356.html>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법 무 부

수신자 검찰총장(형사1과장)
(경유)

제목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신뢰가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질서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신뢰의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국무총리
제출용



수신자



검사 *신가희* 과장 *신우현* 검토역장 *최동민* 차관 *문영주*
 전일 06/20
 장관 *김성환*

발조자

시행 형사기획과-3190 (2008.06.20.) 접수 ()
 우 427-720 경기 과천시 관운로 88 (중앙동 1) / http://www.moj.go.kr
 전화 02-2110-3542 전송 / sonfac@moj.go.kr / 비공개(5)

국회 제출용

* 법무부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특별 수사지시 공문

검찰에서는 지시에 따라 당일 바로 수사방침을 발표하고, 6월 21일 검사 5명, 수사관 10명의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고소/고발도 없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부당한 수사라는 항의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조중동의 고소는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인 7월초에 있었고, 수사과정에서는 농심에 대하여 고소를 종용하기도 하였다⁴⁾. 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주 기업에게도 고소나 진정을 종용한 사실이 1심 재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8년 7월 3일 회원등급이 운영진이거나 게시관지기인 23명 전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집행하였고, 이에는 미성년자 2명과 취재차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MBC의 작가까지 포함되었다.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검찰은 7월 15일에 운영진 5명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컴퓨터와 저장장치, 수첩, 핸드폰 등을 압수하였으며, 통화내역과 이메일까지도 압수하였다. 이후 전원에 대하여 소환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소환조사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부터 밤 11시경까지 수차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언론의 왜곡보도를 바로 잡기 위한 소비자운동’을 ‘특정 언론사 폐간운동’이고 ‘광고리스트 글 등록’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1심 재판에서 그렇지 않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MBC 작가의 취재메일까지 압수하여 수사에 이용하였다. 8월 초에는 단지 구글에 광고리스트를 올렸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 시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소환조사를 하였다.

8월 19일 검찰은 압수수색이 집행된 6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8월 21일 인소주 카페를 개설한 저와 구글에 광고리스트를 등록한 양재일씨의 2명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후 구속이 결정된 2명은 2008년 10월 21일 재판부의 보석결정이 있기까지 61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검찰은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24명⁵⁾을 기소하였으며 기소된 24명은 매주 1회씩 생업에 지장을 감수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강도 높은

4) 한겨레(2008.7.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8867.html

5) 인소주 카페 운영진 23명에서 미성년자 2명중 고등학생 1명과 MBC 취재작가 1명을 제외한 21명과 카페회원이 아닌 3명을 포함하여 24명이 기소되었다.

재판을 받았고 2009년 2월 19일 최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비롯하여 24명 전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났다. 판결문은 '광고리스트 게재는 허용된다'라고 하면서도 '전화는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기소된 24인이 불법적인 전화를 하였다는 것은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단지 전화를 한 수 많은 성명불상의 시민들과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논리로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이에 24명 전원은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탄압

당시 언소주에 대하여 조중동-경제단체-여당-법무부로 이어지는 부당한 수사촉구와 지시가 있었고, 검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영장청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1심의 재판장이 판결 이후에 밝힌 글에 따르면 재판부 배당시에 '그 전에 다른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비난성 지적을 받았던 2명의 단독판사를 제외하였다.'⁶⁾ 조선일보의 기사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2명의 판사를 임의로 배제를 한 것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조선일보 등에게는 언제든지 맘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부당한 정치적 배당이다.

따라서 언소주의 유죄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신영철 당시 법원장의 불법적인 재판개입 및 정치배당 하에 이루어진 판결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7.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

언소주의 왜곡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의 일환으로 게재한 관련 글들이 대대적으로 삭제되고,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6) 오마이뉴스(2009.6.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9930

검찰에 의하여 구속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찰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무리한 제동을 걸었다”며 무죄 판결을 하였다.

또한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아고라’에 베스트글을 올렸던 인터넷 이용자 4명은 조 회수를 조작하였다는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⁷⁾.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하여 한국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침해를 당하고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위축현상은 1)인터넷상 표현 활동의 양적 또는 질적인 저하와 2)‘구글’, ‘야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로 활동무대를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인터넷상 표현활동의 위축을 보면 기존에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자유롭게 쉽고 간단하게 글을 게재하였으나 이제는 아예 글을 게재하지 않거나 글을 게재할 경우에도 직접적 표현의 자제와 신중한 어휘선택 등 자기검열을 하게 됨으로써 글을 게재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과거에 자기가 올린 글들을 삭제하는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라도 누리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국의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이버망명 현상이 나타났다.

광고리스트를 구글에 올리게 되었고, 한국의 기업인 ‘다음’에서는 삭제된 광고리스트 글들이 구글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 구글은 이러한 글에 대하여 ‘삭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조선일보 등의 삭제 요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사글 삭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008년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와 관련해 구글도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모든 자료를 일괄 제공한 한국의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구글은 사용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7) 경향신문(2009.5.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01756375&code=940202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망명은 그 효과에 있어 극히 미미하며 한국인 절대다수가 이용하는 한국 기업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한국인이 피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이며 위축이다.

조중동 광고리스트 데이터베이스	
2008년 7월 리스트	2008년 6월 리스트
날짜	조선일보 광고리스트 URL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리스트도 업데이트예정임)
2008년 7월 4일	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A0u-EG-LtCOA
2008년 7월 3일	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AGorQutj1EGg
2008년 7월 2일	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C72xMg9rtveg
2008년 7월 1일	http://spreadsheets.google.com/pub?key=p_s9QsQy5_QDbJ8O-XE19eA
	This is Only Advertisement Lists of some daily newspapers in Korea.
	이 인터넷 주소를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아무런 문제없는 문서(단지 특정 언론 광고주 리스트만 있는 문서)에 대해 글로벌 기업 구글에 삭제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게시: Google 문서도구

* 구글에 등록된 조선일보 광고리스트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상 글의 게재뿐 아니라 사적인 이메일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년간 축적된 개인의 모든 이메일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고, 방송사 작가의 취재메일 자료까지 압수되자 시민들은 이메일 계정을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G메일로 대거 이동하였다. 언론주의 기소자 24명도 메일계정을 모두 G메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사태에 대하여 2009년 3월 25일 미국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는 ‘인터넷을 검열하는 국가’란 제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선정하 바 있다. 포린 폴리시는 “한국은 인터넷 가입률이 90%에 이르는 IT 선진국으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도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시례발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박대성 | 필명 '미너르바', 인터넷 논객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의 가장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기본 권리이자 토대를 이루는 민주주의의 뿌리였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의 사생아였다.

인류의 반만년 역사상 인간은 언제나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으로 나누어 졌으며 그로 인하여 일반 대중은 언제나 기득권과 기회의 평등을 차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왕과 노예, 귀족과 농노로 나뉘지면서 계급에 따른 착취의 역사 속에서 일반 대중의 피와 땀과 눈물의 연장선상에서 인류의 역사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표현의 자유라는 자궁 안에서 민주주의를 잉태해 나가는 과정은 마치 어머니의 출산과 같은 피와 눈물로 점철된 숭고한 역사의 순환 과정이었다.

일반 피 지배 계층인 대중은 근대 이전 신분과 종교의 구속 아래에서 언제나 고통을 받아 왔다.

1649년 영국의 찰스 1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수많은 대중의 희생 위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을 위하여 시대는 언제나 산고의 고통과 같은 대중의 피와 희생을 요구 하였다.

인류의 거대한 반만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 300년 역사라는 것은 비루하기 짝이 없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주의는 진보의 연장선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는 진행형이다.

분출하는 자유를 향한 대중의 시대적 욕구는 언제나 지배 계급에 의해 항상 도전 받아 왔고 표현의 자유라는 그늘 아래에서 항상 진보와 혁신을 꿈꾸어 왔다.

하지만 그러한 탄압에 굴복할 때 일반 대중은 언제나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무시되고 억압 받아 왔다.

근대 민주주의가 잉태 하는 그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은 서로 충돌 하는 개념이었다.

그로 인해 언제나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여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침해를 받아 왔으며 또한 시대가 뒤 바뀌어 가면서 애국주의로 포장되어 오면서 지배 계층 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을 합리화 시키는 위험한 도박을 성공 시켜 왔다.

그렇다.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차별화되는 말이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것 또한 사회적가치관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회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대가 뒤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제나 변화하는 포용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관과 윤리 기준을 정부가 문서화 된 법으로써 강제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적 제한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가해 질 때 그 사회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발전을 멈추고, 개개인들은 정체성 상실을 통한 사회적 후퇴를 경험하게 된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견고한 계급 사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 수단은 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했다. 따라서 개인의 인권 침해와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왜곡된 자기 합리화에 불과 하며 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를 침해 하는 법질서 왜곡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흘렸고, 그 부산물인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피의 대가를 요구한 투쟁의 역사였다. 결국 개인 스스로가 권리에 대한 가치를 망각 하는 그 순간. 대중은 언제나 복종과 희생을 강요받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 민주주의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2009년 초 '미네르바사건'으로 기록된, 한국의 민주주의가 뒤로 가는 역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고, 앞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좋은 교훈을 주었다.

다시는 이러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폭력은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수탈과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사례발표]

언론의 자유 침해

최상재 | 전목언론노동조합 위원장

1.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언론법 개악

현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등 한국사회를 운영하는 중추적인 원리들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국 방송구조인 다공영 일민영(KBS, MBC, EBS / SBS) 체제를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공영방송의 영역은

<참고> 신문시장점유율

o 추정치 비교

	미디어경영연구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선일보	17.3%	25.8%
중앙일보	15.5%	21.2%
동아일보	15.4%	19.1%
합계	48.3%	66.1%

* 사설 미디어경영컨설팅 기관, 2005년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 추정자료 및 점유율 조사

** 지역신문발전위, 2005년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

o 2005년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 추정자료 및 점유율' 조사 (미디어경영 연구소)

- 조·중·동 3사 추정발행부수 : 649만부
- 종합일간지·특수지·지방일간지 전체 135개 총 발행부수 : 1347만 7000부

o 2008년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 조·중·동의 전체 신문시장(무료신문, 어린이신문, 전문지 등 포함) 점유율 59.7% (조선 25.6%, 중앙 19.7%, 동아 14.3%)
-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점유율이 66.7%로 상승
- 종합일간지만으로 대상을 한정할 때 3개지의 점유율은 72.1%까지 상승

o 2008년 4월 조·중·동 발행부수 추정치 (언론노조가 각사 운전부 등 통해 취합)

- 조선 206만부, 중앙 163만부, 동아 153만부

대기업 자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 신문사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 신문은 현정권과 결탁하여 보수적인 색채의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공영방송의 축소는 대자본과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세 개의 신문사가 국민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 국민들 상당수가 여당인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안(신문법, 방송법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은 국민 70%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을 한국 역사상 초유의 폭력행위를 통해 날치기로 처리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미디어법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절차의 무효 여부를 심도있게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1> 2009년 한나라당 법안 관련 여론조사표

조사	일시	여론 조사 내용	결과
----	----	----------	----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6월6일~7일	방송법 개정안 의견	찬성 24.4%, 반대 62.8%
MBC-코리아리서치	6월2일~3일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채널 소유 질문	찬성 23.3% 반대 66.9%
한겨레-리서치플러스	5월30일	방송법 개정안 의견	찬성 25.4%, 반대 61.4%
한국사회여론연구소	6월1일	미디어법 개정 물음	반대여론 감안해 합의 처리 75.5% 합의대로 6월표결처리해야 24.5%

이는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한국사회의 언론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언론지형 재편은 그 합리적인 논거와 이유, 재편의 목적,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 사회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조중동-재벌 방송' 출현을 목적으로 하여 정권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8개월 동안 끈질긴 저항이 계속됐던 이유도, 근본적인 재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적다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언론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 열지도 않았습니다.

2. 언론인에 대한 탄압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정방송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파업을 주도한 언론인들을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것은 지난 1999년 방송법 파업 때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하에 국가권력에 의해 체포된 언론인은 10여명을 넘고 있습니다.

① MBC: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에 대한 보복

특히 MBC 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중 발생한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진단했습니다. 그러자 언론의 비판 대상이어야 할 국가기관 농식품부의 장관은 명예훼손을 제기했고, 2009

년 3월25일 이춘근 PD를 시작으로 PD들과 작가들이 줄줄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권력 비판기능을 수행한 언론인을 기소한 이 사건은 현재 형사 재판으로 진행중입니다.

<참고> PD수첩에 대한 형사재판

PD수첩은 MBC 시사 프로그램. 지난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하자 청와대와 농림수산물식품부는 MBC PD 수첩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게 됐고, 6월20일 농식품부가 명예훼손 수사를 의뢰한다.

그리고 7월 16일 방통심심의위는 PD 수첩에 대해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리고 MBC는 방통심의위의 시청자 사과명령 수용해 사과방송(8월12일)을 하게 된다. 09년 1월7일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담수사팀장 사표 제출했고, 사건이 다시 배당된 후 정운천 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3월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 MBC 이춘근 PD 긴급 체포했고, 제작진 6명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결혼을 앞둔 김보솔 PD는 물론 작가들까지 모두 체포했다.

② YTN: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에 대한 증징계

현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가 YTN의 사장으로 내려오자, YTN 소속 언론인들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 씨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합법적인 파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앞 둔 새벽에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파업 1년을 맞은 지금, 6명의 언론인은 지금도 해고상태이며, 회사측에 의해 회사 출입조차 금지되어 주한 프랑스 문화원에서 망명 아닌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2>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들의 이후 행보

조직명	직책	성명(전직)	현직	
방송특보단	단장	양휘부(구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상임특보	구본홍(전 MBC 보도본부장)	YTN 사장	
	특보		이몽룡(전 KBS 부산총국장)	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국록(전 진주MBC 사장)	아리랑TV 사장
			허원제(전 SBS 이사)	18대 국회의원
			김용한(전 CBS 본부장)	한국토지공사 감사
			차용규(전 울산방송 사장)	OBS 사장
	곽경수(전 KBS SBS 기자)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전략실	실장	김인규(전 KBS 이사)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TV토론팀장	이성완(전 KBS 주간)	아리랑TV 방송본부장	
뉴미디어팀	팀장	진성호(전 조선일보 인터넷뉴스부장)	18대 국회의원	
공보단	팀장	이동관(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청와대 대변인	
	총괄상황팀장	박흥신(전 경향신문 부국장)	청와대 언론1비서관	
	지방팀장	김좌열(전 경북일보 서울지사 부국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메시지팀장		신재민(전 주간조선 편집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허용범(전 조선일보 워싱턴특파원)	국회 대변인
언론위원회		최규철(전 동아일보 논설주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이성준(전 한국일보 편집인)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	
		김효재(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18대 국회의원	
		김종완(전 동아일보 부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상무이사	
		김현일(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상무이사	
		함영준(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서옥식(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김영만(전 스포츠서울 사장)	경남FC 대표	
		임은순(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신문유통원장	
		김해진(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코레일 감사	
		기세민(전 남도일보 정치부장)	신문유통원 경영기획실장	
		임연철(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국립극장장	
		강남훈(전 국제신문 정치부장)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참고기사> IFJ 아태지역국, YTN 기자 체포 규탄

국제기자연맹(IFJ)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은 23일 성명을 내고 “YTN 노조 지도부 4명의 체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IFJ 아·태 지역국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경찰이 YTN 노조 지도부 4명을 체포한 것은 YTN 사태와 관련해 지난 7개월 간 진행된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 체포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태 지역국은 “경찰이 4명을 체포하면서 출두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YTN 노조는 26일 경찰 출두 일정에 합의하는 등 협조적이었다”며 “특히 YTN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자의적 체포는 파업을 악화시키기 위해 당국이 직접 개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태 지역국 재클린 파크 국장은 “국제기자연맹은 해고된 노조원들을 복직시키고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종결하는 것 등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YTN 사측이 YTN 노조와 공개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권유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보 2009년 03월 24일 (화) 11:50:14 박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

③ KBS: 사장 강제해임, 언론인 해고/강제전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권력과 기득권을 비판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KBS는 이명박 정권이 불법적으로 사장을 강제 해임한 데 이어, 평소 권력에 비판적인 기사와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해고하거나 비제작 부서에 강제 전보시켰습니다. 지금 KBS는 정권으로부터 임명된 사장이 내부의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공영방송인 MBC는 권력이 임명한 이사진들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감시하기는커녕 평소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던 보도 프로그램의 비판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소속 언론인과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④ 언론인 표현의 자유 침해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D수첩의 보도는 물론, 언론자유가 위태롭다는 의미로 검은 색 옷을 입고 방송을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참고기사> ‘검은 옷 앵커 심의’ 반발 확산

MBC와 SBS 방송 앵커들이 검은색 옷차림으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YTN 사태를 주도한 YTN 노조에 동참하는 의미인지를 심의해 문제 삼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방침에 대해 당사자들은 “코미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노조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장검열”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는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MBC·SBS 뉴스를 모두 체크한 뒤 검은 색조의 상의를 입은 앵커들에게 출석·서면 진술을 하라고 지난 6일 두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는지, 검은 옷은 맞는지 소명하라는 요구였다.

방통심의위는 공문에서 MBC 이정민·차미연·최대현·박소현·박경추·김정근·김주하, SBS 신동욱·김소원·김석재·최혜림·손범규·정미선 등 앵커 10여명을 진술 대상으로 지목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앵커들에게 일절 진술을 거부토록 하고 심의를 강행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심리적 고통을 준 데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앵커들이 모두 검정·감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닌 데다, 두 진행자 모두 검은색을 입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MBC 앵커들도 “단지 검은 색조의 옷을 입었다고 ‘블랙 투쟁’을 했다고 몰아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 토픽감에 해당되는 ‘양심검열’ ”이라고 반발했다. SBS 노조는 성명을 내 “검은 옷을 왜 입었느냐고 물어 대답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심의대상이 아니란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두 방송사 측은 방통심의위의 부적절한 지시와 권한 남용으로 보고 본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파문이 일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위원들이 알아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생각해보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을 것으로 본다”며 “응답이 없으면 심의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2009년 1월8일 김정섭 기자>

⑤ 언론법 반대 투쟁에 대한 탄압

심지어 지난 7월 22일 국회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절차로 언론법을 통과시키려 한 데 대해, 언론노동자들의 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의 언론인들과 함께 집회와 시위로 그들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들의 저항을 억압하고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을 가족앞에서 체포해가는 야만적 폭력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인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하고 연행해 가는 행위들은 언론자유 운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며,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고 정권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 사장으로 앉히는 행위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내부적 통제를 구조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그동안 한국의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비판, 국민의 알권리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책임조차 할수 없게 하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입니다. 1986년 군사 정권 시절 정부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인 김주언씨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언론인 겁주기’이며, 현재의 언론장악 기도는 물리력만 동원하지 않았을 뿐 과거 독재정권을 그대로 닮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

집회 시위의 자유

유성 | 인문단체연석회의 활동가

1. 집회/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문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집회의 개최·진행, 참가에 대한 정부의 불허 권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경찰이 매우 폭넓고 모호한 이유들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경찰이 모든 야외 집회에 대한 불허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형사 처벌된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다.

가. 폭넓은 금지 통고 사유를 활용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최대한

금지사유	해당 조항	건수	비율
장소경합	8조 2항	140	46.8%
교통소통제한	12조 1항	69	23.1%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시간, 장소, 교통소통, 과거집회 전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들도 구체성을 결여한 채 모호하게 되어있다. 경찰은 이러한 다양함과 모호함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공공질서위협	5조 1항 2호	31	10.3%
보완불이행	7조 1항	16	5.4%
생활평온침해	8조 3항 1호	16	5.4%
잔여집회금지	8조 1항	8	2.7%
금지장소	11조	7	2.3%
군사시설주변	8조 3항 3호	6	2.0%
학교시설주변	8조 3항 2호	4	1.3%
금지시간	10조	2	0.7%
계		299	100%

표 1 2008년 집회 금지통고 현황
(기간: 2008년 1월~2008년 12월, 출처: 경찰청)

1) 주요도로 상 집회 금지 (전국 89개 요 도로 자의적 집회 금지 가능)

경찰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열릴 집회·시위를 교통 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도로”에는 사실상 도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상 거의 모든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교통의 어려움 역시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모호한 이유면 충분한 금지 사유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집회 시위로 인한 교통 소통의 어려움은 경찰이 교통 정리를 통해 감소시켜야 할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청와대, 국회, 법원 등 주요 핵심기관 앞 집회 금지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공공기관은 그 시설 사용자에게 대한 항의나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전달해야 할 곳임에도 그 앞에서의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하도록 하여 집회 시위의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3) 야간집회 원천금지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원칙적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수의 국민들이 주간에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민들

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교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제로 경찰은 야간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조항은 2010년 6월30일까지 계속해서 적용되며, 검찰과 경찰은 “개정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야간 집회를 제한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 집회 장소 경합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해 먼저 신고된 집회를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 방침으로 인해 유명 집회의 장소 선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이나 노동조합이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집회를 계획할 경우, 관련 기업이나 경찰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들이 미리 다른 집회 신고를 하는 경우는 것이다. 이런 집회들은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유명집회”라 부른다.



< 그림 1> 집회 신고를 위한 달리기 시험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달리기 시험이 벌어지는 어이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집회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이 달리기 시험에서 이기는 측의 집회 신고를 먼저 접수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나. 금지 통고 등 기본권 제한 주체가 법원이 아닌 경찰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매우 엄격한 법적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닌 행정 기관인 경찰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집권 정치세력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바, 집권세력을 비판하거나 기존 체제에 반하여 소수의 목소리를 내려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에 기본권 제한의 권

한을 일임하고 집시법 상 폭넓은 해석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 집시법 외에 광장 사용에 관한 지방 정부 조례 등을 이용한 규제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광장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함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경찰은 광장을 경찰 수송 버스 차벽이나 경찰 병력을 사용해서 물리력으로 봉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집시법 외에도 광장 사용에 관한 지방 정부 조례가 활용되고 있다.

<그림 2> 경찰이 서울 광장을 경찰 병력 수송 버스로 둘러 봉쇄한 모습.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이 끝난 다음날인 5월 30일 오전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밤샘 촛불추모 행사를 한 시민들을 강제로 몰아낸 뒤 광장을 봉쇄했다.

최근에 조성된 광화문 광장의 경우 조례에 의해 광장 사용의 허가권을 서울시장에게 있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장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호에 의해 광장의 자유로운 사용이 제약받게 된다.

조례는 광화문광장 조성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를 위한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시민들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광장 사용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2. 정치적 의견 표현자에 대한 체포 등 법적 탄압

가. 집시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1인시위, 유인물배포, 기자회견 등에 대한 처벌

현행 집시법 상 1인시위나 단순한 유인물 배포는 집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를 집회로 간주하여 강제 해산하거나, 체포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옥외 기자회견의 경우도 참가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1)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발언, 구호 등을 외치는 경우 미신고 집회로 간주, 처벌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문화제에서 피켓을 들거나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이유를 들어 집회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이나 문화제가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강제해산시키거나 체포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등 다양한 방식의 의사 표현 행위가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집회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밝혀진 바 없다.

2) 현행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 1인 시위(1인 피켓팅), 유인물 배포를 현행법 체포
한국 법원은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 시위로 보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여러 명이 번갈아 하는 릴레이 1인 시위나 근접한 거리에서의 동일내용 1인시위를 변형된 미신고 집회로 보아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혼자서 피켓팅을 하는 1인 시위가 폭력 사용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단순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불법 유인물 배포 혐의로 체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7월 15일과 16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만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학생들과 시민들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발행한 홍보물을 불법 유인물이라고 규정하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며 홍보물을 압수하고 배포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킨 뒤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임의 동행을 거부한 62세 부녀자의 팔을 움켜잡고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했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적용법규도 갑자기 바뀌어 '경범죄처벌법'으로 급조해 즉결 심판

처리 했으나, 즉결 법원은 이에 대해 '면제' 판결을 내렸다.

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다. 경찰에 책임이 있는 충돌이나, 집회 참가자 중 일부에 의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도 집회 전체가 불법 집회로 규정되며, 이러한 충돌과 주최자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주최자가 함께 기소된다. 이렇게 불법으로 규정된 집회의 주최 단체는 이후에 다른 집회를 주최하려고 할 때 불법 집회 전력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게 된다.

또한 폭력 사용과는 무관한 집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도 공동공모정범 이론을 적용하여 함께 폭력 시위를 한 것으로 기소가 된다. (공동공모정범 이론이란 직접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공모하였으면 함께 처벌하는 법리를 뜻한다.) 그러나 수천, 수만명에 이르는 다양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당 집회 이전에는 서로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자신은 단순한 집회 참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한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우발적 폭력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을 뜻한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벌금 50만원, 미화로 약 430달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에 있었다는 이유로 일반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부가하여 300만원 이상(미화로 약2500달러)의 벌금을 구형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는 노동자 한달 최저 임금의 약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3. 익명성 뒤에 숨은 경찰폭력, 책임지지 않는 공권력

가. 평화적인 시위 참가자에게도 가해지는 경찰 폭력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 정부와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비무장에 단지 피켓을 들었을 뿐인 참가자들, 여성이나 어린이, 장애인 같은 신체적 약자에게도 경찰은 가차없이 곤봉으로 가격하거나 방패 찌기 등의 위법한 폭력을 가한다. 이는 공무를 집

행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집회 현장 취재 기자들에 대한 폭행과 카메라 파손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청은 해당 언론사에 공식 사과를 하지만, 비슷한 사례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그림 3> 규칙에 어긋난 “방패 짝” 공격



<그림 4> 경찰 폭력으로 피흘리는 남성



<그림 5> 경찰 폭력으로 피 흘리는 여성



<그림 6> 규칙에 어긋난 “머리 부분” 가격

나. 익명성 뒤에 숨은 진압 경찰

시위 진압 경찰은 진압복에 이름이나 식별번호 등, 경찰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지를 달지 않으며, 이름표가 달려있는 정복을 입는 경우에도 검은색 테이프나 조끼 등으로 이름표를 가린 채 작전에 나선다. 최근에는 언론의 촬영을 의식하여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림 7> 취재 기자를 위협하는 경찰

이렇게 진압 경찰이 익명성 뒤에 숨기 때문에 위법한 폭력 사용 등 공권력을 남용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가해 경찰을 특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림 8> 방패를 사용하여 취재를 방해

다. 처벌받지 않는 경찰폭력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 등 경찰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경찰의 직권 남용이나 공무원에 의한 폭력 사용/집회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이나 검찰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간혹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여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증거불충분,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사가 중단된다.



<그림 9> 경찰이 이름을 가리는 문제를 다룬 MBC 방송 보도

일례로 2005년에는 두 명의 농민이 시위 도중 경찰에게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검찰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료하였다.

4. 시위 진압 경찰력의 강화

가. 진압 장비 강화

2008년 이후 시위 진압 경찰의 진압 장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경찰관 개인보호구의 강화에서부터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화학무기 및 저살상 총기 사용의 확대, 신형 장갑 차량 개발 및 각종 보조 차량의 기능 향상에까지 전방위적인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해 전투경찰용 장비 구입에 52억 3530만원(미화로 약 4,450,000 달러)을 사용했다. 이는 전년대비 67%가 늘어난 액수이다. 또한 1998년 이후 사용이 중단되었던 최루 화학 무기 사용이 재개되었다. 경찰은 최루액을 물대포와 개인 분무 장비의 형태로 분사하며, 최루액에 디클로로메탄 등 발암위험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경찰은 경찰 병력 수송 버스 차량을 물리적 장벽으로 활용하여 시위대를 차단하고 광장을 봉쇄하는 전술을 펼쳐왔는데, 2009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대당 8500만원(미화로 약 73,000 달러)이 넘는 '트랜스포머' 차벽 변형 차량이나 최루액 분사 장치를 장착한 경찰 수송 버스 차량을 도입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카메라 촬영 및 조명 장비 등이 탑재된 각종 시위대 처벌과 해산을 위한 보조 차량을 개량/강화하고 있다.



<그림 10> 새로 도입된 변형 “차벽” 차량



<그림 11> “차벽”으로 변형한 모습

나. 대테러목적으로 도입된 부대의 투입 및 무기 사용

한국 경찰은 대테러부대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부대나 장비는 그 특성상 통상적인 경찰 부대나 장비보다 더욱 강력한 살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테러목적으로 설치된 경찰 부대나 장비를 일반 시위 진압에 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84년 대테러작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된 경찰특공대는 실제로는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 시위의 해산이나 노동자 파업 해산에 투입되고 있다. 경찰특공대가 본래 목적인 대테러 진압 작전에 투입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1) 비살상(non-lethal) 무기 외에 저살상(less-lethal) 무기 사용의 확대

또한 집회 시위 진압이나 노동자 파업 진압 작전에서 테이저건, 다목적 유탄 발사기 등 대테러작전용 무기를 도입하여 안전 수칙을 어기고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12> 7월 22일, 대테러무기를 사용하며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는 경찰특공대

지난 7월 22일의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작전에서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이 조합원의 얼굴에 맞아 논란이 되었다.(그림 13)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테이저건 등의 사용시 전극침을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림 13> 시위대 얼굴에 맞은 전극침

또한 같은 날 경찰은 다목적 유탄발사기를 조합원들에게 발사하여 논란이 되었다. 다목적 유탄발사기는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인질범의 체포 등 대테러작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5. 집권여당의 집회 시위 자유 말살 법안들

가. 개악 집시법

이미 집시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조문을 삽입한 법률안을 국회에 다수 발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2008년 7월), 성윤환 의원 대표발의(2008년 8월),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2008년 9월),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2008년 10

월), 이종혁 의원 대표발의(2008년 11월),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2009년 1월)한 집시법 개정안들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복면 등의 착용 금지 및 처벌’의 내용을 포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통과 만에 의한 영상촬영’, ‘소음규제 강화’ ‘형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이들 법률안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벌금 현실화라는 명분의 ‘형벌강화’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이다. 벌칙 중 과료를 삭제하고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벌금액을 50만원~300만원에서 25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료를 삭제(정갑윤 대표발의)한다는 내용이고, 신지호 법안의 경우,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참가자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현행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하는 등 현재 벌금보다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벌금으로 억제하겠다는 아주 심각한 발상이다. 현행 집시법 아래서도 행정절차의 미비로 인해 과태료(형벌이 아닌, 행정처벌)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형벌로써 처리돼, 시민들은 과도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다.(촛불시위로 인한 벌금 액수 15억원에 육박)

나. 불법행동 집단소송제

이런 상황에서 소위 ‘떼법’이라 불리는 불법행동집단소송제가 상임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쳤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지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불법 집단행동 피해시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법 제정을 위한 여론몰이를 집요하게 해 왔다. 불법행동 집단소송제는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피해집단 대표의 소송만으로도 일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인데,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조차 갖추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과피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집단소송제도를 악용해(집단소송제도는 집권여당의 반발에 의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금전적인 위축으로 제압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다. 원천봉쇄 강화 (경직법 6조)

정부는 전대통령의 자살을 슬퍼하는 국민들의 조문을 막기 위해,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조문장소를 경찰버스로 에워싸거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고, 5월 30일에는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했으며, 그 이후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의해 광장봉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6월 4일에서야 광장 봉쇄를 해제했다. 경찰이 광장 봉쇄의 이유로 내 세운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였다. 현행법상에서도 경직법의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법해석에 의해서 국민들의 기본권(통행권, 이동권, 집회시위의권리)등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직법을 개악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범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던 것을 강제동행으로 바꾸고 벌칙으로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하는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현행 법률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넘어, 법을 개악해 인권침해를 가중하겠다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사례발표]

대한민국에서 교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 - 2009년 교사 시국선언 탄압에 대하여

동훈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와 ‘언론·출판의 자유’(헌법제21조)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직자 역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양심을 배반하도록 하는 것은 반 인권적이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도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한된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런 경우에도 그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⁸⁾.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을 교사로서 극형에 해당하는 해임·파면, 나머지 전임자를 정직에 처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하는 한편,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조치는 교사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항쟁에 의해 발전해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압

8)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 국민보다는 제약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3헌바51 판결)

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동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에 자세히 알려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작태에 경종을 고하고자 한다.

1. 사건의 경위

2009년 6월 18일 교사 17000여명은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디어법 입법 중단과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중단 및 학교운영 민주화,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의 확대 및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월 26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여 전교조 전임자 88명을 시국선언을 주동하였다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56조, 제57조,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강경 탄압으로 나오자, 전교조는 7월 19일 2만 8600여명의 현직 교사들의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와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월 31일 교과부 2차시국 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중 파면 및 해임 대상자 23명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 등 대부분의 교육청은 역시 분명한 명분과 이유 없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대로, 전교조 중집위원은 해임, 나머지 전임자는 정직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가 10월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이를 빌미로 7월 3일 사상 유례없이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7-8월 전임자 전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8월 말 전임자 개인 E-mail을 압수하고 심지어는 9월 29일에는 시국선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전임자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까지 실시하는 등 과잉수사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중이다.

2. 역사적 측면에서 '교원의 표현의 자유' 탄압의 부당성

1985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 이래 이 땅에서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시절에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당국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전교조 건설 투쟁을 지나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복직을 이룬 이후인 문민정부 이후 시국선언을 하였다고 교사들이 탄압을 받는 경우는 2003년 총선 당시에 선거 국면에서 행한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라 하여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교원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이미 역사적으로 명확히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민과 교사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교원의 표현의 자유를 민주적 권리를 확보해온 것이다.

<참고자료 1>

역대 교사 시국선언 사례

- 2008. 10.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역사 교육자선언’
- 2008. 6. 8696명의 교사가 참여한 ‘쇠고기 재협상과 교육정책 전면전환 촉구 학교대표자 선언’ 발표
- 2007. 3. 울산 교사 1,453 한미FTA관련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선언
- 2006. 3. 새만금 관련 교사선언 - ‘우리 아이들의 미래, 새만금은 살아야 합니다.’
- 2005. 7. 경기 1050명 미군부대 평택이전 반대 교사선언
- 2004. 12. 18,352명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교사선언
- 2004. 11. 교사 23,988명,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촉구 전국교사선언’
- 2004. 7. 이라크 전쟁 참전 및 추가파병 반대 교사 시국선언
- 2003. 10. 전국 교사 700여명, 10.9 부산 638명, 충북 203명 등 여러 지역에서 ‘이라크파병반대 교사 시국선언’
- 2003. 3. 대통령 탄핵반대 교사 시국선언

* 당시 총선 국면이어서, 대법원에서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민노당을 지지한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원, 100만원에 처해진 바 있음.

- 2002. 8. 전남 816명, 9월 12일 2,619명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해 사건 관련 '전남교사 시국선언' 발표. 다른 지역도 발표
- 2002. 7 경북 715명,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는 경북 교사선언'
- 2001. 5. 전국 7,434명,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학교대표자 선언'

3.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의 부당성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교조 집행간부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⁹⁾, 및 대법원¹⁰⁾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민주주의,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몇 분간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행위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를 발표하는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달리

9)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3헌바51 판결

10) 대법원 1992.2.14. 선고 90도2310

학사업무를 저해하는 등 직무전념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금지)를 들어 교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3조(정치활동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이란 선거에서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이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¹¹⁾는 국가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바, 양자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된 공무원의 ‘정치운동’은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여러 행위들’에 한정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의 의미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¹²⁾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1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선거 시기도 아닌 일상 시기에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교사 시국 선언이 교원노조법상 금하는 '정치활동'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정치운동'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은 교원의 기본권을 심히 억압하는 정치적 탄압인 것이다.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교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제56조), 복종 의무(57조), 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교과부가 교사들에게 시국선언에 서명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교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어긴 것이고, 그러기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법률에 명백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명운동은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명운동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단 몇 분(분)안에 이루어지는 서명으로 인해 직무 전념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결국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자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 복종의무 위반

1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규정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개정 1972.5.4, 1977.4.22>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라는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란 모두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적법한 직무상 명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인 바, 시국선언이 법령에 위배된 행위가 아닌 한, 이를 금지하는 명령 자체가 불법 부당한 것으로서 교원이 그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들의 시국선언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명령을 법과 헌법 위에 올려놓는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교원의 시국선언은 역사적으로 교원의 민주적 기본권으로 확보되어온 표현의 자유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위법인양 여론을 조직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역사상 유례없이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가 하면 E-mail 압수 수색에 이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계좌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탄압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분노 이전에 이것은 우리 사회를 민주화 이전의 독재정원으로 되돌리는 심각한 문제라 인식하며 탄압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시국선언 탄압이 이렇게 민주주의의 역사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는 우려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는 바, 전교조는 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교원 시국선언의 정당성, 교원의 표현의 자유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선 전교조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등과 함께 법률적 대응에 적극 임하고 있다.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향후 징계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당국의 탄압의 부당성과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교원단체 및 노동단체, 인권단체 등과 연대하여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부당한 탄압 규탄 국제 여론을 조성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탄압을 계기로, 야당과 연대하여 교원의 정치적 활동 및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활동도 적극적으로 전

개하고자 한다.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잠자는 교사들을 일깨워 1987년 교사대중운동의 비약적 발전을 불러왔다. 1989년 교사들의 전교조 결성 선언에 대한 공안몰이식 탄압도 전교조를 압살시키지 못하고, 결국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불어와 교원들의 민주화 운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번 시국선언에 대한 상식 이하의 졸렬한 탄압도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전교조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반역사성과 반민주성, 반인권성을 일깨워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공고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민사회와 국민과 연대하여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2>

교사시국 관련 상황일지

- 6. 12(금)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차 법적 검토
- 6. 13(토)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검토 의견서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다산) 접수
- 6. 15(월) 교과부, 시국선언 관련 '교원 복무 관리 및 지도 강화하라'는 공문 발송
- 6. 17(수) 선언참여교사 명단 최종 취합
교과부, 시국선언 관련 '교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관련 복무 관리 철저 지시하라'는 2차 공문 발송
- 6. 18(금)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11:00, 대한문 앞)
- 6. 22(월) 1만 7천여 명의 참여교사 명단 공개(교육희망)
- 6. 26(금) 전교조 위원장, 교과부 규탄 및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11:00)
2차 시국선언 추진 발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전교조 위원장 등 42명 고발
- 6. 29(월) 교과부, 전교조 위원장 등 88명 고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항의 기자회견(11:00, 청운동 사무소 앞)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위해 이동, 연좌 (15:00)
위원장 포함 지부장 등 16명 연행 (15:30)

- 연행된 16명 종로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 배치(16:00)
6. 30(화) 위원장을 비롯 연행된 16명 석방 (19:00)
7. 3(금) 전교조 본부(새벽 5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와 서울지부 사무실 압수 수색
-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50여명의 형사, 3개 중대 전경버스 9대 배치
책상, 책꽂이, 캐비닛 등 관련 자료 미구 뒤지며 시국선언관련 자료 및 본
부 서버, 개인물품 등 압수함
7. 3(금) 전교조,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긴급 기자회견
7. 5(일) 시국선언 탄압에 항의하는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 개최(14:00, 서울역)
9명의 전직 위원장단 현 시국에 대한 입장발표
7. 6(월) 민변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전교조 시국선언 공동변론인단'(단장 최병
모) 구성
7. 7(화) 형사 고발된 88명에 대해서 검찰 및 경찰의 소환장 발부
서울경찰청장, 영등포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고발(압수수색 관련)
7. 8(수) 참여연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7. 19(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서울)
7. 1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참여교사 28600명)
7. 31(금) 교과부 2차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방침 발표
파면 및 해임 대상자 23명으로 확대
8. 14(금) 해임대상자 증집위원 조계사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8. 25(화) 2차시국선언에 대한 검찰, 경찰 조사 시작(전국)
8. 28(금) ktu서버의 메일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전교조전임자 및 상근자 일부, 개인 이메일계정 압수수색
경북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경고 (82명)
9. 28(월) 시도교육청별 징계위원회 개최
9. 29(화) 검찰에서 전교조전임자 및 상근자 일부, 전교조 법인계좌 압수수색
10. 6(화) 대구지부장 1차 공판(대구지방법원 21호)
- 본부 및 서울지부를 제외한 시도지부장은 불구속 기소,
전임자는 약식기소(200만원)
 - 기소 완료된 지역부터 1차 공판 진행 중임.
- 10 7(수) 전교조 위원장등 5명 1차 시국선언관련 검찰조사

<참고자료3>

교사시국선언문 1차: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숭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 비극적인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습니다.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이 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1.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1.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1.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2009. 6. 18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6,171명의 교사

<참고자료 3>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문- 2차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시국선언교사 탄압 중단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깊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이런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국선언 교사 대량 징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입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소통의 시대'라 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 현 정부는 최근 소통의 부족을 절감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정당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할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 전환이야말로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합니다.

1.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1.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며, 사교육비를 감소하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을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09년 7월 19일

정진후 외 28,634명의 교사 일동

[사례발표]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다량 징계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무원을 파면하다

홍성호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³⁾ 전 수석부위원장

1. 잃어버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현 정부 집권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초기에는 현 집권여당에서 전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오히려 현재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이뤄왔던 성과들이 무너지는 것에 주목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정권의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줄세우기와 정치적 탄압 속에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한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1961년 군사정부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거의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된 이후 40여년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한 국민전체의 봉사자, 정치 중립의 의무, 특별권력관계 등 여러 이론적 근거 속에서 극도로 제한받아 왔다.

그러던 중 2002년 공무원노동조합의 건설, 2004년 공무원노조의 정치자유선언 등을 거치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그 한

1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Korean Democracy Government Employees' Union, K.D.G.E.U.).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Court Government Employees' Union, C.G.E.U.)와 통합하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Korean United Government Employees' Union, K.U.G.E.U.)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계를 완화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 또는 공인으로서의 행위만을 그 제한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면 부정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고 양심선언한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불온도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한 파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파면, 경찰지휘부를 비판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고발 및 징계 등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시국선언 논의 과정에서 정부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노조의 주요 지도부를 형사고발하고 현장 간부들을 대량징계한 사례는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제약받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파면·해임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량징계 사태와 정부가 특히 공무원노조에 대해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2. 공무원노조 대량징계 개요

지난 2009년6월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를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민주공무원노조가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3개 공무원노조가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대량징계는 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 6월 ▶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논의

- 6.23 ▶ 청와대, 공무원 시국선언 불법 규정 및 강력 대처 방침 천명
 -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와 중징계조치
- 6.24 ▶ 행정안전부, 공무원 시국선언 불법 규정 발표
 - 집단행위 금지,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조치
- 7.13 ▶ 민주공무원노조, 대국민광고 게재 (한겨레, 경향신문 전면광고)
 -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시국선언 탄압 규탄
- 7.16 ▶ 행정안전부, 7.19 범국민대회 관련 공문 시행
 - 관련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 대회참여자 전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 7.19 ▶ 3개 공무원노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국민대회 참여
- 8. 3 ▶ 행정안전부, 7.19 범국민대회 주도 및 참여자, 형사고발 및 중징계 방침
 - 16명 형사고발, 105명 징계

이에 2009년10월9일 현재, 정부가 징계방침을 밝힌 105명 중 46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되었고, 15명에 대해서는 징계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며, 39명에 대해서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징계가 확정된 46명 중 파면·해임은 14명, 기타 중징계는 10명, 경징계는 22명이며,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이름	노조직위	소속 기관			이름	노조직위	소속 기관	
1	홍성호	수석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중앙부처	8	최승목	지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중앙부처
2	이연구	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9	안명수	지부장	보건복지가족부	
3	박원태	지부장	경찰청		10	황보우	지부장	통계청	
4	서문수	지부장	공정거래위원회		11	이동춘	지부장	환경부	
5	박경애	지부장	교육과학기술부		12	정현재	위원장	부산시 영도구청	지방자치단체
6	민혜수	지부장	기획재정부		13	임해숙	부위원장	경기도 하남시청	
7	황익수	지부장	농산물품질관리원		14	윤순석	본부장	경기도 오산시청	

특히 지난 9월30일 징계가 확정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11명은 2009년7월13일 게재된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의 신문광고와 7월23일 게재된 헌법조문을 나열한 릴레이광고를 이유로 전원 파면·해임되었다.¹⁴⁾

이는 광고 게재 외에 집회 참여까지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없이 종결처리되거나 경징계로 마무리된 것에 비해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정부의 징계요구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정부 요구보다 낮게 결정되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노동자를 전원 파면·해임한 것이다.

3.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박탈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대량징계는 표면적으로 신문광고와 집회참여가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3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통합과 민주노총¹⁵⁾ 가입을 결정한 데 따른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다.

이는 2009년9월21~22일 조합원 총투표에 앞두고 정부가 9월10일 대외비로 시행한 ‘3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지침’과 9월16일 시행한 ‘공무원 복무관리 추가지침’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결정한 것에 엄중 대처’ 등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기인하는 한편, 공

14) 관련된 신문광고는 2009년7월13일 한겨레신문 7면, 경향신문 32면에 게재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신문전면광고와 2009년7월23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헌법조문을 나열한 릴레이광고이다. 이상의 광고는 이 글 마지막에 자료로 첨부하였다.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무원노조가 민주노총 등 노동진영과 함께 정부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공무원노조 무력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민주노총 가입 결정 이후 대폭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 법령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아예 박탈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부와의 공방은 한국의 공무원노조가 식물화가 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4. 결론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획득을 위해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개인과 집단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다른 기본권만큼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실로 정치적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를 말하므로, 이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95헌바48, 1997. 4. 24).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일부 제약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의거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성과 상식이 통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아예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결국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획득해나가는 싸움은 길고도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유의미한 투쟁이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라는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자료1> 2009년7월13일 한겨레신문 7면, 경향신문 32면에 게재된 전면광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민주주의·서민경제·한반도 평화·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모이자! 7.19!"

교사 공무원 사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2009년 7월 19일(월) 16시 서울광장



서울지역본부: 시청지부 강동구지부 강서구지부 관악구지부 광진구지부 구로구지부 금천구지부 노원구지부 도봉구지부 동작구지부 서초구지부 성동구지부 양천구지부 영등포구지부 은평구지부 용문구지부 중구지부 경기도지역본부: 고양시지부 부천시지부 수원시지부 시흥시지부 오산시지부 평택시지부 포천시지부 하남시지부 화성시지부 안성시지부 안성지역본부(중): 연수구지부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서구지부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지부 고흥군지부 곡성군지부 광안시지부 구례군지부 목포시지부 신안군지부 영암군지부 영도군지부 해남군지부 부산지역본부: 중구지부 서구지부 동구지부 영도구지부 부산진구지부 동래구지부 남구지부 북구지부 해운대구지부 시흥구지부 금정구지부 강서구지부 연제구지부 수영구지부 사상구지부 기장군지부 울산지역본부: 남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울주군지부 대구지역본부: 거제시지부 거창군지부 남해군지부 마산시지부 양산시지부 진주시지부 하동군지부 함안군지부 함양군지부 농업기술원지부 제주지역본부: 도청지부 서귀포시지부 제주시지부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 환경부지부 통계청지부 교육과학기술부지부 노동부지부 경찰청지부 보건복지가족부지부 기획재정부지부 공정거래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지부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서울교육청지부

 경향 독자 게시판			
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교육과학기술부지부
국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공정거래위원회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환경부지부
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주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기획재정부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통계청지부
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의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경찰청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
인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보건복지가족부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물부지부